정　　관

법인 한국헬시에이징학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헬시에이징학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이 법인은 근거의학을 중심으로 한국 100세인을 위한 『건강생활 · 행복나눔』을 실현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생활건강을 통한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건강정보 교류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연구 및 개발, 최신의료 정보제공 등 이에 따른 전문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헬시 에이징(healthy aging)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심포지엄 개최(홍보 및 계도사업)
2. 연구발표 및 학술대회(전문가교육 및 세미나개최)
3. 협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출판사업)
4.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영양학, 건강식품학, 간호학, 재활의학 등 헬시 에이징 관련 분야의 학술적 교류 및 연구, 실용화(표준화)작업
5. 헬시 에이징을 위한 신체기능 검사 및 기능식품, 화장품 선택의 지식 보급과 관리(대국민 교육 및 계몽사업)
6. 국내외 간의 학술 및 정보교류와 기술협력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국가, 사회, 국민의 이익에 공여하고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건강과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 및 노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 이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사업과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한의사, 치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및 건강 관련 업계 종사자 등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로 구성한다.

①정회원 : 법인의 사업과 목적에 찬동하는 상기회원.

②준회원 : 법인의 사업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

법인의 발전에 공이 있는 단체는 특별회원으로 개인은 명예회원으로 위촉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6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5. 법인 해산에 관한사항.
6.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되거나 법인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7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필요 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2.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8 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10 조(총회의결 결격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사항
2.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의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6인 이내
3. 이사 17인 이내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조직 편제상 이사장,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4. 감 사 : 2인 이내

제 12 조(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1개월 내에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 14 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당연히 이사가 된다.
4. 부회장은 주요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5 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1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16 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17 조(감사의직무)

1. 법인의 예산운용 및 결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18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9 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때 제21조(이사회개최) 이사회는 매년 1년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1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의 목적하는 바를 표시하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2 조(서면결의)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의할 수 있고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3 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목적하는 사항, 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현재수
3. 출석한 이사의 성명(서면표결자 포함)
4. 의사의 개요 및 의결사항

제 5 장 위 원 회

제 24 조(위원회)

1. 이 법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그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하거나 심의한다.
3.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및 직원

제 25 조(사무국 및 직원)

1.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사무국 및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26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1.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2.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27 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28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 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30 조(사업계획 및 예산)

1. 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 예산이 수립되지않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이 수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한다.
3. 전항의 수입 및 지출은 새로 수립한 예산의 수입 및 지출로 본다.

제 31 조(사업보고 및 결산) 회장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 및 결산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2 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총 회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산한다.

제 34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총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35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정관 및 부칙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 후 즉시 시행한다.
2. 설립당초의 임원은 별지의 임원 명부와 같이한다.
3. 정관 제 5장 24조 4항에 의거, 교육 아카데미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2018년 9월 13일 삽입)